

##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고인	기관·단체명	대표자 성명	
	전화번호/Fax	전자우편	
	주소		
지정신청 변경사항	[ ]명칭 [ ]주소 [ ]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 [ ]품질인증기관의 보유 인력·시설 및 장비		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1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0제2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### 산림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의2제3호에 따른 금액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(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절차

